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99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 시행	3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근거 마련 등	8
3.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	11
※ 참고자료	16
1.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16
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주요내용	17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7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 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
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개정안은 ① 시·도지사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③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공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④ 환경부장관이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8조의2(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시·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u>

현행	개정안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공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9~2023년)은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중 12개소(71%)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5개소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²⁾.

또한,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은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목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 연구」(환경부, 2021.12.) p.39

표를 설정하였으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강제성이 없는 등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의견수렴, 지원정책 마련 등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및 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략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의 규정례(헌법 제7조제2항³⁾)와 같이 전략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담당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경우, 연평균 5억 4,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⁴⁾하였으며, 2025년 환경부 소관 예산에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 제8조의2)	2,720	-	-	-	-	2,720	544

주: 환경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역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②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

현행	개정안
	<u>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은 전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⁵⁾,

-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안 제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차원의 검토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②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의견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진실적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8조 및 현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종합·검토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포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환경부장관이 이행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산림청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①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 범위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②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 범위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통계 관리 등을 추가하며, ③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에게</u>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은</u>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 또는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시행 또는 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u> 5. <u>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u> 6. <u>국가 및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u>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장 또는 시·도지사에게</u>----- ----- ----- ----- ----- ----- ----- -----<u>장 또는 시·도지사는</u>----- -----.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또한,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생물다양성센터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통계 관리 등을 추가하고,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에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및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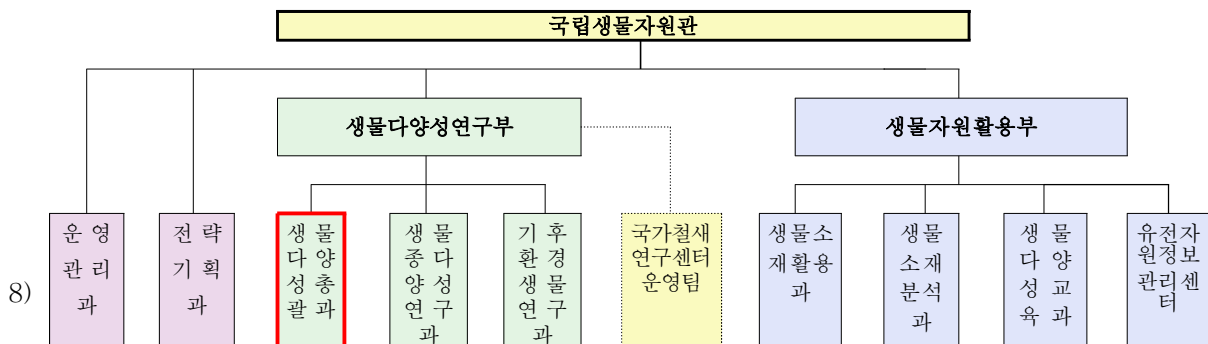
다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경우 별도 조직이 설립되지 않고 현행법 제33조7)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생물자원관의 1개 부서(생물다양성총괄과)에서 해당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비전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 (2050 Goals) (4개)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 (2030 Targets) (23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주요내용

IV. 비전 및 목표

2030 비전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
전략 목표	❶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 → 국제사회 의무 이행 * 생태우수지역 30% 달성 노력,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50% 이하 관리 등
	❷ 자연예택 지역 공유, 경제 효과 창출 → 정책 수용성 확대 * 생태관광 연계, 탄소 상쇄 이익 및 복원 일자리 창출 등
	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 생물다양성 주류화 * 자연자본 정보 공시체계 마련,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정책분야 & 12개 핵심과제

	생태계	생물종
보전	❶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❷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❸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❹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이용	❺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❻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❽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이행 강화	❾ (기업)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❿ (시민)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⓫ (과학)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 및 과학적 평가 기반 구축 ⓬ (정부)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	

21개 실천목표가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이행